

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 
( 제 2 차 본 회 의 )  
2013.5.31(금) 10:00

#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

**총무위원회**

[전문위원 임종호]

## 목 차

1	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-----	2
2	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설치 및 운영조례안 -----	5
3	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-----	8
4	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-----	10
5	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-----	12
6	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-----	14
7	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-----	16
8	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-----	18

# [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]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5. 10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5. 13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5. 27

## 2. 제안이유

- 포장박스제조공장인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 조기정착을 꾀하고, 장애인의 근로와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 현황

- 회 사 명 : (주)도하인더스트리
- 위 치 :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
- 규 모 : 부지 6,612m<sup>3</sup> / 공장 1,200m<sup>3</sup>
- 사업내용 : 포장박스제조업(펄프가공)
- 고용규모 : 37명(장애인 30명)
- 사 업 비 : 2,549백만원(군비 1,189, 민간자본 1,360)
- 소 유 자 : 거창군

## 나. 위탁사무

- 「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」 제4조(업무 및 기능)
  - 장애인을 위한 근로사업장 운영
  -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
  -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
  -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
  - 그 밖의 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다. 위탁사무 기간 :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

## 라. 수탁자격

-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(그 하부기관 포함)
  - ※ 장애인단체에서 수탁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가점 부여

## 리. 수탁자 선정

- 수탁자 : 공개모집
- 선정방법 :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

## 마. 향후 추진계획

- 2013. 5월 : 「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정
- 2013. 6월 초순 : 수탁자 모집 공고
- 2013. 6월 중순 :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위·수탁 계약 체결
- 2013. 6월 하순 :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개소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포장박스 제조공장인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, 나아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다른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일감확보, 판로 개척 및 공장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것으로,
-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, 시설장비의 유지관리, 그 밖의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향상 등을 감안할 때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은 동의합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##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##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##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5. 10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5. 13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5. 27

## 2. 제안이유

-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치하고, 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근로사업장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나. 근로사업장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5조)
- 다. 위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위탁평가 및 재위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근로장애인 선발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
- 바. 운영비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
- 자. 승인 및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0조 · 제11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치하고, 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
- **그 주요내용을 보면**
  - **안 제4조**에서 장애인근로사업장 업무와 기능을 근로사업장 운영,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, 지역사회 사업과 연계, 그 밖에 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,
  - **안 제5조와 안 제6조**에서 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, 그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,
  - **안 제9조**에서 근로사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, 근로사업장의 수익금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이 제정 조례안은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
- 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다만 안 제9조 운영비에서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됨으로서, 위탁 받은 법인이나 업체에서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운영비를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**

**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**

**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**

#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5. 1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5. 13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5. 27

## 2. 제안이유
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우리 군민이 쉽게 잘 이해할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를 순화함(안 제5조제3호, 안 제7조제2호)
- 나. 중복되는 용어를 변경함(안 제7조제1호)
- 다. 행정기구 표현을 명확히 함(안 제9조제1항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사회정의에 앞장서거나 미풍양속의 계승발전 위해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, 그 밖에 중복되는 용어 변경과 행정기구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
-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[ 심 사 보 고 서 ]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5. 1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5. 13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5. 27

## 2. 제안이유

-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과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, 위탁기관 관리 강화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군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규정을 보완함(안 제6조)
- 나. 위원의 제척·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신설함(안 제7조)
- 다. 위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
(안 제10조·제11조)
- 라.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 규정을 신설함(안 제12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,

## ○ 그 주요내용을 보면

- **안 제4조**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에서 자치사무의 수탁기관 재계약시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,
- **안 제6조**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전문가 등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3이상인 되도록 구성토록 하여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
- **안 제7조에서** 위원회 제척·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, 제11조에서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하였으며,
- **안 제12조에서**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미비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

○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[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 ]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5. 1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5. 13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5. 27

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 개정(2013.1.1)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인용하는 법조문·용어 및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군지역과 관련이 없는 중과대상지역 조항 삭제함(안 제13조)
- 나.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용어를 정비(안 제14조, 제15조)
  - 과세특례 ⇒ 도시지역분
- 다.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을 변경함(안 제16조)
  - 5만원 이하 ⇒ 10만원 이하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2013. 1. 1일 「지방세법」 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과 부합하도록 인용하는 법조문·용어 및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로서,

-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[ 거창군 공공시설내 매점 및  
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]  
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5. 13
- 나. 제출자 : 조기원, 강창남, 이애숙 의원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5. 13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5. 27

## 2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」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국가 유공자의 생활과 경제적 안정 도모와 사회적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및 사용·수익허가 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자, 만65세 이상인자, 한부모가족,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,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계약일 1월이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- 라 계약신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계약자의 의무를 규정함.(안 제7조)
- 바. 계약의 해지(안 제8조), 사용료 징수를 규정함(안 제9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,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및 사용·수익허가 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,
  - **그 주요내용을 보면**
    - **안 제2조**에서 지원대상을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자, 만65세 이상인자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,
    - **안 제3조**에서 적용범위를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,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하되 매점의 경우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로 제한하였으며,
    - **안 제4조와 제5조**에서 계약신청은 계약일 1월 이전 공고하고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등이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 군수에게 제출한 조례로서,
- 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 
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
[ 심 사 보 고 서 ]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5. 13
- 나. 제출자 : 강철우, 조선제, 이애숙 의원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5. 13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5. 27

## 2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근로환경, 낮은 임금 수준, 과중한 업무 등으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음.
-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5조)
  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
- 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라.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- 마.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
- 바.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
- 그 주요내용을 보면
  - **안 제5조에서**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노력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,
  - **안 제6조에서**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동시에
  - **안 제7조에서**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, 안 제8조에서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서
- 조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상위법령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 
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
[ 심 사 보 고 서 ]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05. 13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3. 05. 13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05. 27

## 2. 제안이유

- 수승대관광지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설치된 오토캠핑장과 야영장 데크 시설의 이용료 징수와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수승대관광지의 보존·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 군의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수승대관광지의 새주소 및 면적 변경사항을 정함(안 제2조)
- 나.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의 준금고 납입시간을 변경함  
(안 제6조·제7조)
- 다. 유선장 폐지에 따른 유선장이용권 조항을 삭제함(안 제7조5항)
- 라. 현실에 맞지 않은 관람료 면제조항을 삭제함(안 제8조제5호)
- 마. 오토캠핑장, 야영장 시설 추가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정함(안 별표2)
- 바. 야영장 데크 설치 및 오토캠핑장 개장에 따른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함(안 제7조, 별표3)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수송대관광지의 보존·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 군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
- 그 주요내용을 보면
  - **안 제2조에서** 수송대관광지의 황산리 769번지를 은하리길 2번지로 새주소를 바꾸고 235,479m<sup>2</sup>를 오토캠핑장 신설 등으로 확장된 297,679m<sup>2</sup>로 변경하였으며,
  - **안 제7조에서** 유선장 폐지에 따른 유선장이용권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관람료 면제조항을 삭제하고,
  - **안 별표 3에서** 오토캠핑장, 야영장 시설 추가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와 오토캠핑장 개장에 따른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한 조례안으로서,
-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